

인천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675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양선화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1. 12. 2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단27028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이 2018. 12.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130,859,2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59,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6행의 “1억 7,005만 원을” 부분을 “170,500,000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1행 이하 라.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라.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9. 6.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원리금 지급 연체를 이유로 단기연체정보(등록금액 7,000,000원)가 등록되기 시작하여 2019. 10. 16.까지 총 5건의 단기연체정보(등록금액 합계 286,000,000원)가 등록되었다. 이후 E은행은 2019. 11. 1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손판정결과통지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1. 14. E은행에게 합계 137,465,446원(= 원금 136,000,000원 + 이자 1,434,595원 + 추가이자 30,8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마.항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9. 11. 28. 주식회사 D,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차전33586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합계 137,993,355원(위약금, 손해금 등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30,859,246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98,388,960원 - 매매계약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7,529,71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결여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28. 주식회사 D, C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2019. 11. 14.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12. 19.에 체결되었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9. 11. 14.에 성립하였다.

②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6. 19.부터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주식회사 D이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별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 2019. 6. 19.경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D에 관하여 2019. 11. 28. 작성된 NICE상세기업정보(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8조1) 제3호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2)는 원고의 대위변제건으로 2019. 11. 14.에 1건 등록되었고(다만, 뒤에서 보는 <표 1.>에 의하더라도 2019. 9. 19.경부터 별건의 채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정보3)는 등록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같은 조 제7호와 관련한 E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는 2019. 11. 13.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2019. 6. 19.에 곧바로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주식회사 D의 2018. 12.경 기준으로 한 채무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고, 주식회사 D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 매입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주식회사 D의 2018년 매출액은 전년인 2017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변동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8년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매출액보다 증가한 점,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 주식회사 D 각 채무의 채무액과 만기구조, 단기연체정보 등록 내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시점, 주식회사 D의 Watch등급도

2019년 상반기까지는 ‘유보’ 단계였을 뿐이고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시작한 후 2019년 하반기에 이르러 ‘주의’, ‘회수의문’ 단계로 변경된 점(갑 제10호증)을 고려할 때, 단순히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소극재산이 이를 초과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참조).

<표 1. 주식회사 D 채무내역4)>

순번	채무내역	채무액	만기구조	비고
1	E은행 대출채무	170,000,000원	1년 이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136,000,000원
2	E은행 신용카드채무	5,000,000원	3월 이하	· 2019. 12. 26.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연체금액 3,230,000원)
3	기업은행 대출채무	100,000,000원	3월 이하	2019. 10. 16. 단기연체정보 등록 (등록금액 10,000,000원)
4	K은행 대출채무	420,000,000원	1년 이하	· 신용보증기금 보증 272,000,000원 · 2019. 9. 28. 단기연체정보 등록 (등록금액 99,000,000원) · 2019. 12. 30.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연체금액 99,000,000원)
5	L은행 대출채무	93,000,000원	3월 이하(66,000,000원) 6월 이하(27,000,000원)	2019. 10. 26. 단기연체정보 등록 (등록금액 100,000,000원)
6	M 보증채무	10,000,000원	2년 이하	

7	N 할부채무	8,000,000원	2년 초과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채무	70,000,000원	2년 초과	· 2019. 7. 6. 단기연체정보 등록 (등록금액 70,000,000원) · 2019. 10. 7.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연체금액 69,953,000원)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채무	40,000,000원	2년 초과	· 2019. 6. 19. 단기연체정보 등록 (등록금액 7,000,000원) · 2019. 9. 19.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연체금액 5,520,000원)
1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보증채무	136,000,000원	1년 이하	· 위 E은행 채무 관련 · 2019. 11. 14.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연체금액 137,361,000원)
11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272,000,000원	1년 이하	· 위 K은행 채무 관련 · 2019. 12. 19.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연체금액 275,520,000원)
합 계		1,324,000,000원		

<표 2. 주식회사 D의 매출, 매입액5)>

연도	반기	구분	매출(원)	매입(원)
2017	상	전자세금계산서	203,645,463	165,649,161
		전자계산서	360,340,000	279,258,000
		소 계	563,985,463	444,907,161
	하	전자세금계산서	205,469,552	160,579,125
		전자계산서	571,639,000	488,701,000
		소 계	777,108,552	649,280,125
2018	상	전자세금계산서	144,840,007	171,647,536
		전자계산서	410,169,000	300,601,000
		소 계	555,009,007	472,248,536
	하	전자세금계산서	142,097,278	154,712,567
		전자계산서	505,571,000	213,537,600
		소 계	647,668,278	368,250,167
2019	상	전자세금계산서	109,976,369	129,321,086
		전자계산서	238,847,000	170,310,000
		소 계	348,823,369	299,631,086
	하	전자세금계산서	13,890,910	9,417,252
		전자계산서(중간예납)	151,590,500	95,605,500
		소 계	165,481,410	105,022,752

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였던 주식회사 D의 H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60,627,307원이 2018. 12. 24. 전액 변제되었다.

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신용보증 거래기간 자동연장 특약)에 의하면 신용보증 거래기간은 관리기관인 원고가 본인(주식회사 D)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지 않고 연장할 수 있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12. 11.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현선헌, 판사 백규재

부동산 목록

1. 인천 동구 F 대 109㎡

2. 인천 동구 F

[도로명주소] 인천 동구 G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주택

1층 61.83㎡(주택)

2층 57.51㎡(주택)

지층 16.38㎡,

.끝.

1) 제8조(사전구상권)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독촉 또는 통지 없이 보증채무이행 전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3. J단체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4. 신용보증서상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조 제3항의 거래중단사유 발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때
6. 채권자로부터 보증부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통지사항 중 채권보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지가 있는 때
7.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그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관리기관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채권보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8.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기록되는 연체정보, 기업의 채무를 보험사 등 보증인이 대신 지급했을 때 기록되는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등이 포함된다.

3)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산재·고용보험료 등 공공요금의 체납정보가 포함된다.

4) 갑 제10호증,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5)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